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38호**

2026년 5월 2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6-004호(어선 서양호 · 어선 수만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서양호 · 어선 수만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 **)

경***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수만호가 2024. 11. 15. 06:15경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 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서방 약 0.03해리 해상에서 서양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입항 중이던 서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로를 가로질러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출항 중이던 수만호가 적절하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